제94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
(해양경찰청)</td><td>1.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기준 신설(신설)
○ 선박의 수면상높이가 해상교량, 송전선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하는 경우 자선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
* (기존) 3개 교량(인천 · 영종 · 서해대교)만 통과시 신고
→ (확대) 전국 15개 교량 및 4개 송전선 수역 통과시 신고
▶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</td><td>1.중요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추가(강화)
○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추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현 행(85개)</th><th>개정안(82개)</th></tr>
<tr><td>신설</td><td>-</td><td>볶음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통합</td><td>찌는 떡, 치는 떡, 삶는 떡</td><td>떡류</td></tr>
<tr><td>고추장 장아찌, 된장 장아찌,
간장 장아찌</td><td>장아찌류</td></tr>
</table>
▶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전체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(신설) ㅇ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선정 기준과 선정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비율을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% 이상으로 규정 ▶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5 2.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(신설) ㅇ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금지되는 사항중, 위탁계약을 맺은 자회사와 비자회사를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▶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6 3.손해사정사 보수교육(신설) ㅇ 보험회사 및 법인 손해사정사는 등록,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의무 부과 - 20시간 (보조인은 15시간,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) 이상의 교육시간을 들어야 하며, 이 경우 외부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 ▶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7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수입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및 처분기준 마련(신설) o 수입식품등 영업자가 통관단계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*하고, 이에 따른 처분기준을 신설**하려는 것임 *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아니됨 ** (1차) 영업정지 1개월 (2차) 영업정지 2개월 (3차) 영업정지 3개월 ▶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	1.비중요
5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신설(신설) o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·운영자(가축분뇨처리업자)가 방류하는 방류수는 3개월마다 측정·검사 실시 ▶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	1.비중요
6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자살예방교육 강화(강화) o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, 노력 실시기관 규정 o 자살예방 교육 내용을 인식개선/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명확화 o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o 자살예방 상담·교육 방법을 규정 o 교육 실시 기관의 교육결과 제출 의무(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) ▶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	1.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7</td><td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
(보건복지부)</td><td>1.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 등(신설)
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기준, 운영기준, 인력기준을 마련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지정 기준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공간</td><td>△ (위치) 서비스 수요, 교통편의 등 고려 접근성이 용이할 것</td></tr><tr><td>△ (구조, 설비)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, 활동공간은 이용자 4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</td></tr><tr><td>△ (소방시설)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구비·유지할 것</td></tr><tr><td>운영</td><td>△ (종사자)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·실시</td></tr><tr><td>인력</td><td>△ (자격) 기관장 및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
- (제공기관의 장)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
- (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인력)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등
△ (교육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</td></tr></table>▶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6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